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 4 조 · 제 13 조 · 제 21 조 · 제 22 조 · 제 23 조 및 수도법시행령 (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용수와 그 원수의 수질기준 및 그 검사방법, 취수장등에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도에 관한 소독 기타 위생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수도시설외의 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그 검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①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별표 1 과 같이 정한다.

② 제 1 항의 수질기준의 검사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이 설치하는 도관에 의한 급수시설중 법에 의한 수도시설외의 시설 (이하 “ 간이급수시설 ”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공급되는 음용수와 수도시설이나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의 급수원으로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우물 (이하 “ 공동우물 ”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공급되는 음용수도 별표 1 의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기준의 검사방법은 별표 2 에 의한다.

제 3 조 (원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① 보건사회부장관이 법 제 13 조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질은 환경보전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되는 환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에의 적합여부의 검사는 평상의 기상상태 아래서 7 일 이상의 간격으로 3 회 채취한 원수를 환경보전법 제 2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4 조 (수질검사신청) 영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수도사업자에 의한 수질검사) ① 법 제 2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는 다음 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정수장에서의 검사

가. 별표 1 의 제 6 호중 색도 및 탁도에 관한 검사 : 매일 1 회이상

나.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의 유리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 회이상

다. 별표 1 의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관한 검사와 제 6 호중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월 1 회이상

2. 수도전에서의 검사

가. 별표 1 의 제 1 호중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에 관한 검사 : 매월 1 회이상

나.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의 유리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 회이상

②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별표 3 의 기준에 의하여 추출되는 수도전에 대하여 한다.

제 6 조 (간이급수시설등에 대한 수질검사) ①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공급될 음용수의 수질이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1회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때에는 수원을 변경하거나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그 수질기준을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음용수의 수질을 별표4의 검사항목 및 기준에 의하여 매6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때에는 정수시설을 개량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수질기준을 별표4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공동우물에 의하여 공급되는 음용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건강진단)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장티푸스, 이질 및 파라티푸스 병원체의 감염여부에 관하여 매3월마다 1회 행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수도의 취수장 또는 배수지 부근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생한 전염병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염병에 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수도의 취수장·정수장 또는 배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이 경우 수도는 간이급수시설로 본다.

제8조 (위생상의 조치)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위생상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취수·저수·정수·배수 및 펌프시설은 항상 청결히 하여 음용수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제1호의 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과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전에 있어서의 음용수의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2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일 때에는 1.5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염소소독을 할 것. 다만, 병원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인 때에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염소소독을 할 것.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 또는 공동우물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는 위생상 필요한 조치

2. 월1회이상 간이급수시설 또는 공동우물 주변에 대한 별표5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의 실시

제9조 (검사기자재의 확보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의 수질관리상 필요한 검사기자재·시약 및 소독약품을 확보·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실시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수질검사방법·건강진단 및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음용수의 수질기준

1. 병원생물에 오염되었거나 병원생물에 오염된 생물 또는 물질에 관한 사항
 - 가. 암모니아성 질소는 $0.5\text{mg}/\ell$ 을 넘지 아니할 것.
 - 나. 질산성 질소는 $10\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염소이온은 $150\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일반세균(보통 한천배지에서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생균을 말한다)은 1cc 중 100을 넘지 아니할 것.
 - 바. 대장균군(그람음성의 무아포성의 단간균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만드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을 말한다)은 50cc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2. 시안, 수은 기타 유독물질에 관한 사항
 - 가. 시안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 나. 수은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 다. 유기인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동·철·불소·폐놀·기타 물질에 관한 사항
 - 가. 동은 $1\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철 및 망간은 각각 $0.3\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불소는 $1\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납은 $0.1\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아연은 $1\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6가크롬은 $0.05\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비소는 $0.05\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휘놀은 $0.005\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경도는 $300\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황산이온은 $200\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카드뮴은 $0.01\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 타.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
4. 과도한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관한 사항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내지 8.5 이어야 할 것.
5. 냄새와 맛에 관한 사항
◦ 소독으로 인한 냄새 및 맛 이외의 냄새 및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6. 무색 투명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사항
 - 가.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탁도는 2도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증발잔류물은 $500\text{mg}/\ell$ 를 넘지 아니할 것.